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53
----------	-------

발의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김정재 · 권영세 · 김학용
서일준 · 유경준 · 박정하
강대식 · 정동만 · 엄태영
김희국 · 서범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항력 인정 범위에 전세권을 추가하고, 미반환 의도 판단 시 임대인뿐 아니라 임대인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로 확대함(안 제3조).
- 나. 전세사기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 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 라. 지원방안의 신청기간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 지원 중인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마.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국토부장관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 바.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
- 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

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안 제30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임차인”을 “자”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를 “충족하고,”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침”을 “마침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대인이”를 “임대인등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전세사기피해자”를 각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전세사기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공인된”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현황 및 권리관계”를 “현황, 권리관계 및 배당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여부”를 “여부, 처분 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유효기간)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이라 한다)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제3항 중 “부동산정보체계”를 “부동산정보체계 및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2.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

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따라 경매하는”을 “따라 경매하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2.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중 “경매나”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유예”를 “유예하거나 삭제”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자는”을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u>임차인</u>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u>제외한다</u>)	나. ----- ----- ----- <u>자</u> ----- ----- ----- <u>제외</u> <u>한다</u>)로서 제6조에 따른 <u>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u>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u>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u>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u>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다. ----- ----- <u>충족하</u> <u>고</u> , ----- ----- ----- ----- -----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
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
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
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제
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
차인

5. (생략)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
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
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
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5. (현행과 같음)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

-----.

1. -----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
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
일자”라 한다)를 갖추는 것(「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도 포함한다)

2. 3. (생략)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
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
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생략)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
른 전세권이 설정된 -----
--

2. 3. (현행과 같음)

4. -----

-- 임대인등이-----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
----- 전세사기
피해자등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전세사기피해자</u> 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대책	3. <u>전세사기피해자등</u> ----- -----
4. <u>전세사기피해자</u> 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	4. <u>전세사기피해자등</u> ----- -----
5. <u>전세사기피해자</u> 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5. <u>전세사기피해자등</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은 <u>전세사기피해자</u> 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전세사기피해자등</u> ----- ----- -----.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④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 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서 <u>공인된</u> 연구기관에서 조교 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2. ----- ----- ----- -- 「 <u>고등교육법</u> 」 제2조제1 <u>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u>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 10. (생략) ⑤ ~ ⑫ (생략)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매각 절차의 <u>현황 및 권리관계</u>: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 ~ 9. (생략) 10.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u>여부</u> 및 피해자 현황: 검찰청, 경찰청 11. (생략) <u><신설></u>	<u>학교나 공인된</u> ----- 3. ~ 10.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 <u>현황, 권리관계 및 배당액</u>----- ----- ----- ----- ----- 2. ~ 9. (현행과 같음) 10. ----- <u>여부, 처분 결과</u> ----- 11. (현행과 같음)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	--

12. (생략)

④ ~ ⑥ (생략)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신설>

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유효기간)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이하 이 조에서

	<u>“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이라 한다)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u>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u>부동산정보체계</u>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u>경우</u>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부동산정보체계</u> 및 「<u>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u>」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① -- ----- ----- ----- <u>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① (생략)

②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세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2.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

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설>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 ① (생략)

②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유예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

③・④ (생략)

<신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우

2.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
----- 따라 경매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③ (생략)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
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 ② (생략)
<신설>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
하게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
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
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
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
하게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
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
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
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
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③ (생략)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
기피해주택 매입) ①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
기피해주택 매입) ① -----

---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
공주택사업자”라 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
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2.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
인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①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

-----.

-----.